



2023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총 제203차 -

【개최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16:00

【개최장소】 서울대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8명(정원 9명) / 감사 2명(정원 2명)

출석이사: Bp. 유경춘, Fr. 정진호, 오혜경, 심점섭, 전재희, 정배호, 김영주, 김선갑 (8명)

출석감사: Fr. 김한석, 오윤숙(2명)

배 석: 사회사목국 국장 Fr. 윤병길, 부국장 Fr. 하영용, 법인사무국 담당관 7명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규약」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종합복지관 공복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5호 의안 서민금융소액대출사업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6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1. 법인 산하 수탁시설 「송화어린이집」 정원 변경 관련 보고

【폐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4시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들은 후,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 인사 말씀

◎ 의장 유경춘 : 법인 임시이사회 참석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자리해주신 임원분들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유경춘 : 법인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등, 총7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오니 각 의안에 대해 임원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전차 이사회의록 확인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한 보완 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출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을 확정시키다.

■ 제1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1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건은 임시이사회 소집시 임원분들에게 공문을 통해 안내된 바 있으나 법인 내부 자산관리에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요인(要因)들이 있어 이번 이사의 의안 상정은 철회하고 구체적인 주요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1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은 법인 내부 자산 관련 주요 사안이므로 추후 상정하는 것으로 의안 상정에 대한 철회를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2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정진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정진호 : 제2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대상: 「정관」 본문 제5조(목적) 목적사업 추가

■ 변경 내용:

현행	변경(안)	변경 사유
<p>제5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구 내의 연락, 조정 및 지원 2. 영유아, 불우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육성 3. 사회복지 관계 기관과의 연락 협의 4. 지역사회조직과 개발사업 및 자원봉사자 활동 조장 5. 인간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봉사 활동 6. 긴급재해복구와 구호사업 7. 사회복지 후원사업 8. 협동복지사업 9.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업 10.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11. 국내입양사업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13.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1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 지원사업 15.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4319호)에 의한 위기상황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16.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7.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p>제5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호-16호 변동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신설] 18.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p>[신설]</p> <p>제5조 (사업) 목적사업 추가(17호) 및 추가로 인한 기존 호 순번 (17호→18호)</p> <p>※ 상세 내용은 「정관」 변경 사유 참조</p>

□ 변경 사유:

1. 본 법인은 법인 「정관」 상 제5조 2호에 영유아복지시설 설치운영(2000년 3월 허가), 12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2001년 5월 허가) 등으로, 지난 23년 동안 어린이집을 직영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음,
2. 최근에 본 법인이 구로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예다음보듬이니눔어린이집 등) 2곳을 수탁운영하고 있는데, 구로구청측에서 그 동안 구립어린이집의 수탁운영의 근거가 된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 상 목적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하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와 3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관」 상 목적사업에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보육사업” 등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명시가 필요하다며, 정관상 목적사업변경을 계도하는 공문을 어린이집을 통해 구로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음.
4. 이에 정관 변경인가 주무관청인 서울시 주무 부서와 면담하였으나, 구로구청측의 입장이 합당하다고 하며, 만약에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현 「정관」 상 목적사업내용으로 향후 재수탁이나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받았기에 금번 임시이사회에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함.
5. 본 법인의 정책상 산하 어린이집에 지원한 시설전출금 지원은 '시설전출금 지원 및 사용지침'에 의거하여 지원(급식 수당)될 것이며, 가능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임.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쳤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2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급여」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3호 의안인 법인 「급여」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정진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정진호 : 제3호 의안인 법인 「급여」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 사전 검토·수정·보완 원료: 법률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교수) 및 김의석 공인노무사(법인 자문노무사)

□ 제·개정 경과

1. 법인사무국 「급여규정」 제정(임시이사회 승인, 1988년 4월 28일)
2. 제1차 개정(정기이사회 승인, 1998년 2월 27일)
3. 제2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00년 3월 6일)
4. 제3차 개정(정기이사회 승인, 2002년 2월 26일)

□ 개정 사유

1. 최종 개정(2002년 3차 개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에 따른 용어 정리, 오타 수정 등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반영
3. 현행 급여, 퇴직(연)금, 각종 수당 체계 반영 등

□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절]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변경: 법인 → 법인사무국, 기준봉급 → 기본급,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변경
[2절] 급여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변경 → 산전·산후 휴가자 → 출산 전후 휴가자 ■ 급여 지급 기준 신설 → 병가자에 대한 급여 기준, 상여금 월별 균등 지급 근거 조문 신설 ■ 인사규정 개정 반영 → 대기병령자 급여 지급 규정 삭제
[3절] 퇴직급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금 규정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제도 관련 조문 신설, 퇴직적립금 비율 10분의 1~12분의 1 변경 ■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제16조(퇴직금 적용 제외), 제17조(퇴직급여금 지급사유) 삭제
[4절]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 분류 및 지급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수당 분류 기말수당 → 복리후생 수당 변경, 정근 수당 지급 시기 균등 조정 ■ 수당 지급 대상, 종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근속 수당 대상자 범위 구체화, 직무수당 비율 반영, 현행 직책 수당 조항 신설, 현행 복리후생 수당(급식비, 명절수당) 내용 반영 및 구체화

※ 이아, 개정(안) 본문 참조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절 총칙	(과동)	
제1조(목적) 본 장은 본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인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법인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 변경: 법인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상세 규정
제2조(적용범위) 본 장은 본 법인에 의해 발령된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법인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삭제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용어 삭제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여'라 함은 본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준급' (본봉)이라 함은 직위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u>기본급여로서</u> 의 기준봉급금액을 말한다. ③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 상여금(기말수당, 분기별지급)과 상여금(정근수당, 분기별의 지급)을 말한다. ④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근속 년 수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금액을 말한다. ⑤ '급여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급여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여'라 함은 본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준급' (본봉)이라 함은 직위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u>기본급여를 말한다</u> . ③ '상여금'이라 함은 <u>기말수당과 정근수당</u> 을 말한다. ④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근속 년 수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금액을 말한다. ⑤ '급여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급여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 변경: 현행 용어로 정리
제4조(기준봉급표 적용) 모든 직원의 본봉은 본 법인 직원 기준봉급표에 따라 지급하며, 기준봉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기준급표 적용) 모든 직원의 본봉은 본 법인 직원 <u>기준급표</u> 에 따라 지급하며, <u>기본급액</u> 은 별도로 정한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 변경: 현행 용어로 정리
제5조(급여조정) 직원에 대한 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적정하게 결정한다.	제5조(급여조정) 변동 없음.	
제2절 급여계산	(과동)	
제6조(급여지급일) ①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의 승인을 얻어 급여 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급여지급일) 변동 없음.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②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보수 지급일 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p> <p>③ 면직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과 별도로 면직 또는 휴직 일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 (급여계산기간) ① 급여의 계산은 매 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p> <p>② 복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적용원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다.</p> <p>③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면직되거나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휴직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에 한한다)된 날이 속하는 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p>	<p>제7조 (급여계산기간) 변동 없음.</p>	
<p>제8조 (일할계산) ① 급여의 계산에 있어 이 규칙에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p> <p>②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p>	<p>제8조 (일할계산) ① 급여의 계산에 있어 이 규에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p> <p>②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p>	<p>[변경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변경: 규칙-규정 • 중복내용 조항 삭제: 일할 계산 정의 제3조 ⑤항에 기인급
<p>제9조 (퇴직 및 사망자의 급여)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해 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당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당해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2년 이상 근무자는 당해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사망 시에는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한다.</p>	<p>제9조 (퇴직 및 사망자의 급여) 변동 없음.</p>	
<p>제10조 (승진자 급여 적용시기) 승급 및 승진자의 급여는 급여 지급일 전에 발령된 경우 당해 월부터 지급하고 급여일 이후에 발령된 자는 익월부터 지급한다.</p>	<p>제10조 (승진자 급여 적용시기) 변동 없음.</p>	
<p>제11조 (겸직자의 급여) 본 법인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직의 급여와 겸직의 급여 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다만, 겸직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1조 (겸직자의 급여) 변동 없음.</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2조 (수습직원의 급여) 수습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기준분급 및 복리후생비만을 지급한다.	제12조 (수습직원의 급여) 수습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만을 지급한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 변경: 현행 용어로 정리
제13조 (휴직자 및 대기발령자의 급여) ① 휴직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사규정 제41조 제1호에 의한 휴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준분급 전액을 지급한다. 단, 42조 단서에 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분급 의 50%를 지급한다. 2. 복무규정 제30조 산전산후휴가 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3. 인사규정 제41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준분급 의 50%를 지급한다. ② 대기발령사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의 5할 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3조 (휴직자 및 휴가자 등의 급여) ① 휴직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사규정 제41조 제1호에 의한 휴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단, 42조 단서에 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의 50%를 지급한다. 2. 인사규정 제41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 의 50%를 지급한다. ② 복무규정 제30조 산전산후휴가 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③ 복무규정 제30조에 의한 병가 에 대해서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 을 지급한다. (신설) ④ 대기발령사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의 5할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변경추가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 변경: 현행 용어로 정리 항, 호 변경: 휴직자, 휴가자 조문 순서 재분류에 따른 현행 제①항 제2호-제②항, 현행 제①항 제3호-제①항 제2호 변경 현행 제②항 삭제: 대기발령자 급여 지급 기준 삭제(인사규정 내 대기발령 조항 부제) 개정(안) 제3항 신설: 병가자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현행 관행 반영)
제14조 (급여지급 방법)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제14조 (급여지급 방법) ①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은 법인과 근로자의 합의하여 지급방법 및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상여금 월별 균등 지급 근거 조문 추가
제3절 퇴직급여금	(좌동)	
제15조 (퇴직금) 법인은 직원에게 계속근로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퇴직금) ① 법인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직할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변경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직할 및 시기 구체화 퇴직연금제도 추가 퇴직금 지급 제외 대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③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적용 제외 대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 조문 추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반영
제16조 (퇴직금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1. 입사후 만 1년 미만인 자 2. 한시적 고용직, 조건부 임시직원 3. 시간근무자 4.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자	삭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퇴직금) 개정(안) 제3항과 중복 내용으로 삭제
제17조 (퇴직급여금 지급사유) 본 법인의 직원으로 발령되어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1. 면직 2. 해고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삭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률에 본 조항 관련 내용 존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반영
제18조 (퇴직적립금) 본 법인 및 산하 각 기관은 매월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의 10분의 1을 퇴직적립금으로 각기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 (퇴직적립금) 본 법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의 12분의 1을 퇴직적립금으로 각기 적립하여야 한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적립금 대상 직원 구체화 및 적립 비율 현실화 제16조(퇴직금 적용 제외), 제17조(퇴직급여금 지급사유) 삭제에 따라 조항 번호 변경 조번호 순연: 제18조 → 제16조
제19조 (퇴직금 기초 산정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17조 (퇴직금 기초 산정기준) 변동 없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번호 순연: 제19조 → 제17조
제20조 (퇴직근속년수 계산) ① 퇴직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8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8월 미만인 경우에는 입할 계산한다.	제18조 (퇴직근속년수 계산) 변동 없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번호 순연: 제20조 → 제18조

항 목	개정 (안)	개정 사유
<p>3. 직제의 개편과 정원의 감원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에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8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p> <p>② 퇴직근속기간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p>		
<p>제21조 (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퇴직 전 부여된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되어야 한다.</p>	<p>제19조 (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퇴직 전 부여된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되어야 한다.</p>	<p>[삭제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인계 내용 삭제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 조분 조번호 순연: 제21조 → 제19조
<p>제4절 수당</p>	<p>(좌동)</p>	
<p>제22조 (기말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한다.</p> <p>② 기말수당은 기준봉급 월 액의 450%로 하고 3월, 6월, 9월, 12월 급여 지급일에 각 100%씩 구정액 50%을 지급한다.</p> <p>③ 기말수당은 직원의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입할계산 지급한다. 퇴직자의 기말수당도 위와 같이 계산 지급한다.</p>	<p>제20조 (기말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한다.</p> <p>② 기말수당은 월 기본급의 400%로 하고 3월, 6월, 9월, 12월 급여 지급일에 각 100%씩 구정액 50%을 지급한다.</p> <p>③ 변동 없음.</p>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정 50%는 기말수당과 성격이 상이하여, 복리후생수당(명절수당)으로 재분류 조번호 순연: 제22조 → 제20조
<p>제23조 (정근수당) ① 법인은 직원에게 기준봉급 월 액의 50%~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연 2회 지급한다.</p> <p>② 정근수당 지급일은 매년 5월, 10월 각기 지급한다. 이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한 한다. 단, 퇴직자는 정근수당 지급 월에 퇴직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p>	<p>제21조 (정근수당) ① 법인은 직원에게 근무년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지급한다.</p> <p>② 정근수당 지급일은 매년 5월, 11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5월 또는 11월 보수지급일이 종사자 신분증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한한다. 단, 퇴직자는 정근수당 지급 월에 퇴직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p>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근수당 비율 오다 수정: 50%~200% → 50%~100%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구체화 조번호 순연: 제23조 → 제21조
<p>제24조 (장기근속수당) 본 법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근무 년 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범위와 금액을 별도로 정한다.</p>	<p>제22조 (장기근속수당) 본 법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법인에서의 계속 근무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순환보직자의 경우 법인 상하</p>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근속수당 대상자의 범위 구체화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시설에서의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의 범위와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번호 순연: 제24조 → 제22조
제25조 (조정수당) 본 법인의 직원 및 특수한 사업장 및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대우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조정수당) 변동 없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번호 순연: 제25조 → 제23조
제26조 (직무수당) 직원의 근무전문성, 책임성 등 근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그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직무수당) 법인의 정규직 직원에게 기본급의 10%를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직무수당 지급 내용 반영 조번호 순연: 제26조 → 제24조
신설	제25조 (직책수당) 직원의 근무 전문성, 책임성 등 근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그 한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직책수당 지급 내용 반영 신설
제27조 (당직근무자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등의 식비와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되, 그 범위와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당직근무자수당) 변동 없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번호 순연: 제27조 → 제26조
제28조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무명령에 의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휴일에 근무한 직원 및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변동 없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번호 순연: 제28조 → 제27조
제29조 (복리후생수당) 본 법인은 직원에게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복리후생수당) 본 법인은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복리후생비: 월 100,000원(급제비) ② 명절수당: 생일 전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 기본급의 50% 지급	[변경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복리후생수당 지급 내용 반영: 수당 지급 기준 내용 구체화 조번호 순연: 제29조 → 제28조
제30조 (기타 제수당) 본 법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근무의욕의 고취와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제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기타 제수당) 변동 없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번호 순연: 제30조 → 제29조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31조 (출장직원의 여비)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출장명령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소요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 (출장직원의 여비)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출장명령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소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법인 여비규정 비준서에 따른 관련 조문 내용 삭제 조번호 순연: 제31조 → 제30조 																																												
제5절 경조축의금	(좌동)																																													
제32조 (경조축의금)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축의금을 지급한다.	제31조 (경조축의금)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축의금을 지급한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타 수정: 별표2 → 별표1 조번호 순연: 제32조 → 제31조 																																												
제6절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좌동)																																													
제33조 (학자금지원) 본 법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 및 그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제32조 (학자금지원) 본 법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 및 그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직원 학자금 지급 및 자녀 학자금 미지원 상황 반영. 지급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 조번호 순연: 제33조 → 제32조 																																												
별표 2. 경조금 지급대상 및 금액	별표 1. 경조금 지급대상 및 금액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 오류 수정: 별표 2 → 별표 1 복무규정(별표1)에 정한 휴가 내용 반영 용어 정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본인결혼</td> <td>300,000</td> </tr> <tr> <td>본인사망</td> <td>1,000,000</td> </tr> <tr> <td>부모(친가포함)</td> <td>100,000</td> </tr> <tr> <td>부모(친가포함) 사망</td> <td>300,000</td> </tr> <tr> <td>조부모(친가포함) 사망</td> <td>200,000</td> </tr> <tr> <td>배우자 사망</td> <td>500,000</td> </tr> <tr> <td>형제, 자매 사망</td> <td>200,000</td> </tr> <tr> <td>자녀결혼</td> <td>200,000</td> </tr> <tr> <td>형제, 자매 결혼</td> <td>100,000</td> </tr> <tr> <td>자녀출생(사망)</td> <td>100,000</td> </tr> </tbody> </table>	구분	금액(원)	본인결혼	300,000	본인사망	1,000,000	부모(친가포함)	100,000	부모(친가포함) 사망	300,000	조부모(친가포함) 사망	200,000	배우자 사망	500,000	형제, 자매 사망	200,000	자녀결혼	200,000	형제, 자매 결혼	100,000	자녀출생(사망)	10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본인결혼</td> <td>300,000</td> </tr> <tr> <td>본인사망</td> <td>1,000,000</td> </tr> <tr> <td>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회갑</td> <td>100,000</td> </tr> <tr> <td>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사망</td> <td>300,000</td> </tr> <tr> <td>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사망</td> <td>200,000</td> </tr> <tr> <td>배우자 사망</td> <td>500,000</td> </tr> <tr> <td>형제자매 사망</td> <td>200,000</td> </tr> <tr> <td>자녀결혼</td> <td>200,000</td> </tr> <tr> <td>형제자매 결혼</td> <td>100,000</td> </tr> <tr> <td>자녀출생(사망)</td> <td>100,000</td> </tr> </tbody> </table>	구분	금액(원)	본인결혼	300,000	본인사망	1,000,000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회갑	100,000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사망	300,000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사망	200,000	배우자 사망	500,000	형제자매 사망	200,000	자녀결혼	200,000	형제자매 결혼	100,000	자녀출생(사망)	100,000	
구분	금액(원)																																													
본인결혼	300,000																																													
본인사망	1,000,000																																													
부모(친가포함)	100,000																																													
부모(친가포함) 사망	300,000																																													
조부모(친가포함) 사망	200,000																																													
배우자 사망	500,000																																													
형제, 자매 사망	200,000																																													
자녀결혼	200,000																																													
형제, 자매 결혼	100,000																																													
자녀출생(사망)	100,000																																													
구분	금액(원)																																													
본인결혼	300,000																																													
본인사망	1,000,000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회갑	100,000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사망	300,000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사망	200,000																																													
배우자 사망	500,000																																													
형제자매 사망	200,000																																													
자녀결혼	200,000																																													
형제자매 결혼	100,000																																													
자녀출생(사망)	100,000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6. 제5차 개정(정기이사의 승인, 2023년 2월 17일)

□ 개정 사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 반영
2.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 반영

□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인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육아휴직)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 반영
복무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의 2(임신 중 시업 및 종업시각 변경) 신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 반영

※ 이하, 개정(안) 본문 참조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6장 휴직</p> <p>제35조(육아휴직) ① 시설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p> <p>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p> <p>③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p>	<p>제6장 휴직</p> <p>제35조(육아휴직) ① 시설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 보호를 위해 신청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분동 없음.</p> <p>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변경·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반영 ■ 임신 중인 여성 직원 모성 보호 내용 추가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변경- 1회-2회 변경 ■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횟수 분할회수 미포함 조문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하다.</p> <p>④ 시설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p>	<p>③ 변동 없음.</p> <p>④ 변동 없음.</p>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4장 휴일 및 휴가	
<p>신설</p>	<p>제33조의 2 (임신 중 시업 및 종업시작 변경)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반영 ■ 임신 중인 여성 직원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허용 조문 신설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쳤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해당 상정 의안 심의시 “... 이사가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질의 하였고 ... 이사 또한, 해당 변경(안)의 경우 상위 법으로 모든 시설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발언 한다.

그러나, 의장은 급변 임시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 복지영역은 명확히 「노인종합복지관 공동운영규정」, 이므로 해당 분야의 공동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출석 이사들이 의견을 함께 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종합복지관 공동 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 제5호 의안 : 서민금융소액대출사업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5호 의안인 서민금융소액대출사업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정진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정진호 : 제5호 의안은 서민금융소액대출사업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 건으로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난 2014년 초,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심하던 중 () 약계층()주민) 당사자들이 창업을 통한 자립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現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2014년도 창업 지원사업」 신청·심의를 통해 민간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2020년까지는 대출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해당 대출금에 대한 상환 등 사후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014년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간 만료일 이후 미상환금액에 대한 연장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사회 심의 후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분 야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 대출 사업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 체결 후, 사업 시작. 2014년 - 2020년까지 38건 740,000,000원의 대출사업을 진행함. 2021년 이후, 대출자에게 원리금을 상환 받아서 해당 원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환원하고 있음. 										
세부 사항	<p>□ 서민금융진흥원 2014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 승인 요청</p> <p>1. 2014년 지원금 기간 연장 신청 (2023. 10. 17.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300 1491 1442 1653"> <thead> <tr> <th>지원연도</th> <th>지원기간 만료일</th> <th>지원금(A)</th> <th>기상환 지원금(B)</th> <th>미상환 지원금(A-B)</th> </tr> </thead> <tbody> <tr> <td>2014</td> <td>2023. 12. 16</td> <td>200,000,000원</td> <td>193,003,986원</td> <td>6,996,014원</td> </tr> </tbody> </table> <p>2. 미상환 대출자(조**) 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대출금: 10,000,000원 대출잔액: 6,996,014원 (약 30% 상환) 대출자 상황: ()주민으로 ()추천으로 자영업(음식점) 창업자금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건강상 문제()로 영업은 종료하였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음. 이후 건강이 약간 회복되어 원리금 상환의 의지를 보였으나 실질적인 상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본회에서는 2020년 3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상환 촉구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며 최근 유선 통화는 불가능한 상황임. 	지원연도	지원기간 만료일	지원금(A)	기상환 지원금(B)	미상환 지원금(A-B)	2014	2023. 12. 16	200,000,000원	193,003,986원	6,996,014원
지원연도	지원기간 만료일	지원금(A)	기상환 지원금(B)	미상환 지원금(A-B)							
2014	2023. 12. 16	200,000,000원	193,003,986원	6,996,014원							

3. 지원기간의 연장은 총3회에 걸쳐 가능하며 2014년 지원금에 대하여 2회의 연장이 있었으며 3회차 연장을 신청하고자 함.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쳤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5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제5호 의안인 서민금융소액대출사업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6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정진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정진호 :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곳은 법인과 산하 직영·수탁 총60개 시설입니다.

해당 의안은 사회복지팀의 각 복지 담당(관)직원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정섭 이사님과 오윤숙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을 안내드리며 본 이사회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과 산하 직영·수탁 60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2023년 제3차 임시이사회 자료집」(이하,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인 및 총60개 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직영·수탁시설)	→ 총 8개 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 법인 및 총31개 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직영·수탁시설)	→ 총21개 시설

◎ 상임이사 정진호 : 먼저, 2023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 승인을 요청해

은 법인 산하 직영·수탁 8개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3년 예산(A)	2023년차 추경예산(B)	증감(B-A)	비율(%)	2023년 예산(A)	2023년차 추경예산(B)	증감(B-A)	비율(%)	
영유아(1개)	수탁	서초3단지어린이집	647,902	621,043	-26,859	-4.1	647,902	621,043	-26,859	-4.1	4
노인(4개)	직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3,278,054	3,302,655	24,601	0.8	3,278,054	3,302,655	24,601	0.8	5
		김현동성당대야케어센터	579,200	463,537	-115,663	-20.0	579,200	463,537	-115,663	-20.0	6
노인	직영	고척동성당대야케어센터	525,000	547,389	22,389	4.3	525,000	547,389	22,389	4.3	8
		행운동성당대야케어센터	483,035	488,337	5,302	1.1	483,035	488,337	5,302	1.1	9
장애인(3개)	직영	다향공동생활가정	64,926	62,431	-2,495	-3.8	64,926	62,431	-2,495	-3.8	10
		마로니아공동생활가정	132,004	135,592	3,588	2.7	132,004	135,592	3,588	2.7	11
		성빈센트환경마을	1,742,620	1,864,368	121,748	7.0	1,742,620	1,864,368	121,748	7.0	12

◎ 상임이사 정진호 : 다음은 2023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 해온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 31개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3년차 추경예산(A)	2023년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3년차 추경예산(A)	2023년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금액	%	금액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9,472,995	10,093,535	620,540	6.6	9,472,995	10,093,535	620,540	6.6	16
종합(6개)	수탁	동촌7경합사회복지관 외 부설 기관	2,925,440	2,898,790	-26,680	-0.9	2,925,440	2,898,790	-26,680	-0.9	17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외 부설 기관	4,066,841	4,142,127	75,286	1.9	4,066,841	4,142,127	75,286	1.9	21
	수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284,876	2,338,714	53,838	2.4	2,284,876	2,338,714	53,838	2.4	24
	수탁	유학종합사회복지관	4,822,000	4,880,000	58,000	1.2	4,822,000	4,880,000	58,000	1.2	25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331,751	2,270,730	-61,021	-2.6	2,331,751	2,270,730	-61,021	-2.6	26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부설 기관	4,608,023	4,634,303	26,280	0.6	4,608,023	4,634,303	26,280	0.6	27
	영유아(6개)	수탁	방배어린이집	504,010	503,089	-921	-0.2	504,010	503,089	-921	-0.2
직영			배동레벨어린이집	364,306	385,339	21,033	5.8	364,306	385,339	21,033	5.8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연
			2023년차 추경예산(A)	2023년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3년차 추경예산(A)	2023년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금액	%	
영유아	수탁	성모어린이집	422,705	421,151	-1,554	-0.4	422,705	421,151	-1,554	-0.4	32
	수탁	영다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575,674	577,956	2,282	0.4	575,674	577,956	2,282	0.4	33
	수탁	한빛어린이집	692,972	699,187	6,215	0.9	692,972	699,187	6,215	0.9	34
	수탁	해뜨락어린이집	397,324	419,104	21,780	5.5	397,324	419,104	21,780	5.5	35
아동 (3개)	직영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65,565	150,844	-14,721	-8.9	165,565	150,844	-14,721	-8.9	36
	직영	셋별지역아동센터	160,633	159,151	-1,482	-0.9	160,633	159,151	-1,482	-0.9	37
	직영	성가정입양원	2,541,466	2,542,746	1,280	0.1	2,541,466	2,542,746	1,280	0.1	38
노인 (8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 관	5,222,160	5,363,287	141,127	2.7	5,222,160	5,363,287	141,127	2.7	39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동작대이케어센터	311,156	327,674	16,518	5.3	311,156	327,674	16,518	5.3	41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부설기 관	3,752,619	3,850,309	97,690	2.6	3,752,619	3,850,309	97,690	2.6	42
	직영	금호동성당대이케어센터	486,673	524,864	38,191	7.8	486,673	524,864	38,191	7.8	44
	직영	서동동성당대이케어센터	439,120	453,745	14,625	3.3	439,120	453,745	14,625	3.3	45
	직영	신당동성당대이케어센터	478,547	482,690	4,143	0.9	478,547	482,690	4,143	0.9	46
	직영	왕십리성당대이케어센터	598,630	616,561	17,931	2.8	598,630	616,561	17,931	2.8	47
	직영	화곡동성당대이케어센터	631,295	634,289	2,994	0.5	631,295	634,289	2,994	0.5	48
	장애인 (6개)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147,580	148,083	503	0.3	147,580	148,083	503	0.3
직영		비둘기직업응용연센터	439,914	439,625	-289	-0.1	439,914	439,625	-289	-0.1	50
직영		사람손주간보호센터	309,380	334,180	24,800	8.0	309,380	334,180	24,800	8.0	51
수탁		서초구립주간이용센터	291,753	306,851	15,098	5.2	291,753	306,851	15,098	5.2	52
직영		성지보호작업장	460,061	462,421	2,360	0.3	460,061	462,421	2,360	0.3	53
직영		신망애의집	703,511	798,233	94,722	13.5	703,511	798,233	94,722	13.5	54
여성 (2개)	직영	빛뜰의집	560,438	589,644	29,206	5.2	560,438	589,644	29,206	5.2	55
	직영	사랑의집	347,367	351,797	4,430	1.3	347,367	351,797	4,430	1.3	56

◎ 상임이사 정진호 : 마지막으로 2023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직영수탁 21개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일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3년차 추경예산(A)	2023년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3년차 추경예산(A)	2023년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금액	%	
총 합 (1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885,969	1,933,176	47,207	2.5	1,885,969	1,933,176	47,207	2.5	60
노 인 (3개)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3,980,609	4,126,650	146,041	3.7	3,980,609	4,126,650	146,041	3.7	61
	수탁 청동노인종합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4,371,871	4,466,852	94,981	2.2	4,371,871	4,466,852	94,981	2.2	62
	수탁 시 립 고 박 양 로 원	2,795,949	2,800,527	4,578	0.2	2,795,949	2,800,527	4,578	0.2	64
장애인 (13개)	직영 공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601,512	601,500	-12	0.0	601,512	601,500	-12	0.0	65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444,605	439,515	-5,090	-1.1	444,605	439,515	-5,090	-1.1	66
	직영 디 털 자 터	2,579,153	2,483,718	-95,435	-3.7	2,579,153	2,483,718	-95,435	-3.7	67
	직영 바오르교실보호작업장	447,337	442,522	-4,815	-1.1	447,337	442,522	-4,815	-1.1	68
	직영 바오르교실주간보호시설	333,252	333,462	210	0.1	333,252	333,462	210	0.1	69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297,157	313,405	16,248	5.5	297,157	313,405	16,248	5.5	70
	직영 사랑손작업허용훈련시설	499,591	506,513	6,922	1.8	499,591	506,513	6,922	1.8	71
	수탁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933,587	1,942,291	8,704	0.5	1,933,587	1,942,291	8,704	0.5	72
	수탁 한우리보호작업장	2,003,900	2,023,750	19,850	1.0	2,003,900	2,023,750	19,850	1.0	73
	직영 헬 켈 러 의 집 공동생활가정 1호	120,717	123,107	2,390	2.0	120,717	123,107	2,390	2.0	74
	직영 헬 켈 러 의 집 공동생활가정 2호	143,594	145,347	1,753	1.2	143,594	145,347	1,753	1.2	75
	직영 헬 켈 러 의 집 단 기 거 주 시 설	737,375	731,231	-6,144	-0.8	737,375	731,231	-6,144	-0.8	76
	직영 헬 켈 러 의 집 주 간 보 호 시 설	283,034	276,875	-6,149	-2.2	283,034	276,875	-6,149	-2.2	77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6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이사가 법인사무국 제2차 추경(안) 중 이월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고 회계담당 당관은 산하 직영-수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요인을 우려하여 확보한 이월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관련하여 이사께서 해당 이월금은 지정으로 후원받은 내용이라 적립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첨언하다.

3속 감사는 이이사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맞으며 법인사무국에서는 향후 후원금 이월금과 적립

금 이월금을 별도 표기하여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였고 법인사무국에서는 향후 이월금에 대하여 수정해 줄 것을 당부하다.

또한 법인에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의장은 임원진에게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하여 묻고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7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직력자 선정(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직력자 선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정진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정진호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직력자 선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제안
[직영] 여성	마을자리	서울시 강서구	2023.10.31	3명	2023.11.01	3명	
[직영] 여성	※ 비공개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바공개	2023.10.31	1명	2023.11.01	1명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직영수탁시설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장 공개모집 절차 진행 이후, 시설장 직력자 선정 심의위원회

							의를 거쳐 최종 학력 자로 선정함
[수탁 종합 복지관	상 계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서울시 노원구	2023.11.14	3 회	2023.11.15	6 회	노원구청과 본 회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이 오 는 11월 14일자로 만료 예정임 아래 노원구청의 위탁 운영에 공개모집에 참 여 심의를 통해 본 법 인이 해당 복지관의 위 탁운영체로 선정된 바 있음.

[참조] 별첨1. 시설장 적격자 이력서 26면-28면 참조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7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 (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은 직영 여성복지시설 마음자리 전임 시설장님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와 신임 시설장님에게는 법인의 설립 이념을 사회복지현장에서 구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전하며 또한, 법인사무국에서는 신임 시설

장님이 시설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에 줄 것을 당부하다.

■ 보고 및 기타문의

◎ 외장 유경춘 : 보고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진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정진호: 법인 산하 수탁시설 송화어린이집 정원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현황

시 설 명	송화어린이집 (시설장:) (영)	정 원 (현 원)	48명(26명)
시 설 규 모	건물 423㎡(건물 456㎡)	종 사 자	12명
소 제 지	서울시 성동구 송정18가길 29(송정동)	관 할 지 자 체	성동구청
시설신고일	1992년 2월 24일	연 간 예 산	534,203천원

□ 정원 변경 사유

1. 인근 지역 재건축 및 타 지역 이사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감소화가 두드러짐. 영유아 현원이 정원의 50% 미만 시, 보조금 예산이 감소되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2. 지역 내 입소 신청 원아의 연령 고려 및 관할 지자체(성동구청)와의 논의에 따라, 만3세-만5세반을 통합하고 정원을 감소하여 운영하고자 함.

□ 정원 변경 현황

정원 변경 전	정원 변경 후
88 명	48 명

※ 연령별 인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장애아	총인원
변경 전	6명	10명	14명	15명	20명	20명	3명	68명
변경 후	"	"	"	통합학급 15명			"	48명

의장은 해당 보고 건에 대한 출석 이사와 감사의 고견(우려점, 등) 유무에 특이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은 금번 2023년 제3차 임시이사회(총203차)에 상정된 총7개 의안,

[제1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 (안) 승인 요청의 건의 경우 법인 내부 의안 검토 필요로 인하여 금번 임시이사회에 의안 상정을 철회하였으며 [제2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종합복지관 공통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5호 의안] 서민금융소액대출사업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다. 또한, [제3호 의안] 법인 「급여」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하다. (※조건: 법인사무국 소속 직원의 급여 규정 개정에 대한 동의 전제.)

기타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마침 기도로 임팩송을 바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인사】 2023년 제4차 임시이사회 예정일 - 12월 19일(화) 16:00 서울대학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실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임원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유 경



상임이사

정 진



이 사

심 정



이 사

오 배



이 사

전 재

희



이 사

김 영

주



이 사

정 태

호



이 사

김 선

갑



감 사

김 한

석



감 사

오 윤

숙

